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14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o prevent Digital Violence)

2023. 12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구기관 : 법무법인 화우

이 보고서는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 법무법인 화우
총괄책임자 : 이수경
참여연구원 : 유현상
이정훈
강석준
장슬기
배종우

목 차

요약문 ····· vi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10

제2장 디지털 폭력 방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 12

제1절 개요 ····· 12

제2절 국내 디지털 폭력 방지 법제 현황 ····· 12

제3절 해외 디지털 폭력 방지 법제 현황 ····· 20

1. 개요 ····· 20
2. 영미권 ····· 20
3. 독일・일본 ····· 21
4. 기타 국가 ····· 21

제3장 디지털 폭력 방지 관련 법제 강화 방안 ····· 24

제1절 개정 방향 ····· 24

제2절 주요 경과 ····· 24

제3절 개정 내용 ····· 25

1. 국내대리인 지정 ····· 25
2.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혐오표현 규제 ····· 31
3. 임시조치 강화 ····· 39
4.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 48
5. 디지털 윤리 교육 확대 ····· 88
6. 온라인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 92

제4장 결론 ····· 96

참고문헌 ····· 99

별첨 ····· 101

표 목 차

<표 1-1> 네이버 댓글 서비스 이용 변화 추이 ····· 1
<표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 실적 ····· 7
<표 2> 세계 각국의 모욕법 제·개정 동향 ····· 22
<표 3-1> 정보·통신 분야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목적과 조정대상 ····· 51
<표 3-2> 타 법률의 분쟁조정위원회 ····· 52

그 림 목 차

[그림 1-1] SNS 이용률 추이 ····· 2
[그림 1-2] 디지털 폭력 형태별 경험 비율 ····· 3
[그림 1-3]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 고소·고발 건수(2009~2019) ····· 4
[그림 1-4]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 고소·고발 건수(2019~2021) ····· 4
[그림 1-5] 연예인 사망을 보도하는 각종 기사 ····· 5
[그림 1-6] 연예인들 사망에 대한 설문조사 ····· 6
[그림 1-7] 사이버 렉카 피해사례 및 각종 관련 유튜브 콘텐츠 ····· 6
[그림 2-1]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 17
[그림 2-2] 온라인 피해365센터 상담절차 ····· 18
[그림 3-1] 주 이용 SNS 서비스 ····· 26
[그림 3-2] 주 이용 동영상 서비스 ····· 26

요 약 문

1. 제 목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표명 및 정보교류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급속한 확산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와 같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종 · 다양한 디지털 폭력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도의 규제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

3.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현행 법제 파악을 위하여 국내외 디지털 폭력 규율 법제를 살펴보고, 디지털 폭력을 규율하는 방안으로 현행 법제의 구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신설 ·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함

첫째, 본 연구는 디지털 폭력의 정의 확립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한 디지털 폭력 방지책 강화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둘째, 본 연구는 디지털 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대상 확대 및 관련 기관 설치 등 디지털 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

셋째, 본 연구는 디지털 폭력 관련 인식 제고・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의무화 등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

넷째, 본 연구는 디지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개선 등이 구비

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마련함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디지털 폭력 방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1) 국내 디지털 폭력 방지 법제 현황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 행위, 그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은 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을 정하고 있음

2) 국가별 디지털 폭력 방지 법제 현황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한 국외의 입법 동향은 영미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미법계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형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취급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독일, 일본 등 대륙법 국가는 일반형법 등을 통한 규율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남

나. 디지털 폭력방지 관련 법제 강화 방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폭력방지 관련 법제 강화 방안으로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사업자 중 국내에 자회사가 있거나 임원구성 및 사업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 하나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고, 국내대리인이 해외 사업자와의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들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임시조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책임자의 업무, 분쟁조정을 위한 문서의 수령으로 확대하였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상의 명령 및 처분과 관련한 문서의 수령을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포함함

2)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혐오표현 규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 용이하여 일반적인 모욕 행위에 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를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소위 '악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

또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언어폭력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발동시키도록 하는 소위 '혐오표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정보를 추가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의 규정 및 학계에서 논의되는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를 참고하여 혐오표현을 좁은 의미로 정의함

3) 임시조치 강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요청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음

또한,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사실상 임시조치로 일원화 되었음

이러한 실무를 반영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사항을 '임시조치'로 단일화함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권리침해 정보의 처리방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르 하여야만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보게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를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정보게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되도록 함

또한,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해당 정보는 삭제되도록 하여 임시조치의 후속절차를 명확히 함

이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아 임시조치를 한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혐오표현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함에 따라 혐오표현 정보로 피해를 받은 자도 임시조치 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현재 디지털 폭력에 대한 분쟁조정기구로서 운영중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그 집행력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 폭력을 둘러싼 가해자·피해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다양한 양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폭력에 대해 자주 이루어지는 조치인 임시조치가 가지는 태생적 문제점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분쟁조정기구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렸다고 평가받는 조정기관들도 대다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특이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기구 내부에 설치되어있음

따라서, 분쟁조정기구의 보다 높은 집행력·강제력을 확보하고, 임시조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편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력과 강제력이 높아진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조정기구를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모욕 등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도록 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종결력을 높이며,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직권조정 제도를 갖추는 등 그 역할을 강화시켜 디지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

5) 디지털 윤리 교육 확대

학생 시기에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장을 교육

대상으로 삼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민간 영역의 경우 교육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장에서의 의무교육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 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온라인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온라인 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 피해365센터가 온라인 피해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한 제도로서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일원화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피해구제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

5. 정책적 활용 내용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종합하여 디지털 폭력 관련 단기적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폭력에 의한 청소년 피해 예방, 사회적 해악 감소에 관한 정책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 등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디지털 폭력 규율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6. 기대효과

디지털 폭력 예방 및 해악성 감소 기여 및 온라인 문화 개선 기대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o prevent Digital Violenc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role of expressing opinions and exchanging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has continued to expand with the rapid spread of online communiti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SNS).

However, the current laws do not adequately reflect these changes, and various types of digital violence are increasing rapidly, so it is time to explore multi-faceted regula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domestic and foreign laws regulating digital violence to understan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onsidering the current legal system's composition as a way to regulate digital violence, seeks to create and amend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trengthen measures to prevent digital violence and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by establishing a definition of digital violence and creating a cyber insult offense.

Second,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for prompt relief of victims of digital violenc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digital violence-related postings and temporary measures and establishing related organizations.

Third,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aw and system, such as mandating relevant education to raise and improve awareness of digital violence.

Fourth, the study recommends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o strengthen penalties for digital violence and improve victim relief.

4. Research Results

1)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to prevent digital violence

1. Status of domestic legislation to prevent digital violence

Various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cyberspace, such as invasion of privacy and defamation, are mainly regulated b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Act contains various measures to prevent various forms of rights infringemen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to minimize damages. In particular,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provides for the operation of a defamation dispute mediation unit withi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S") to mediate disputes over defamatory acts occurring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establishes a system for designating domestic agents for overs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2. Status of Digital Violence Prevention Legislation by Country

Overseas legislative trends on defamatory speech in cyberspace differ between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countries, with Anglo-American countries often treating defamation as a civil tort and resolving it as a matter of liability for damages rather than as a subject of criminal regulation, while continental law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tend to approach the issue centered on discipline through general criminal law.

2) Measures to Strengthen Legislation to Prevent Digital Violence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ajor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s a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to prevent digital violence.

1. Designation of a domestic agent

If an overseas business has a subsidiary in Korea or a legal entity that exercises a dominant influence on the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ard and business operations, the Act imposes the obligation to appoint one of these entities as a domestic agent, and stipulates that the domestic agent must secure an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with the overseas business.

In addition, the scope of tasks that can be represented by a domestic agent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asks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users, such as the work of a juvenile protection officer, temporary measures, the work of a person in charge of preventing the distribution of illegal images, and the receipt of documents for dispute settlement, and the receipt of documents related to orders and disposition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s been included in the scope of tasks that can be represented by a domestic ag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2. Establishment of Cyber Insult Offenses and Regulation of Hate Speech

Insulting acts commit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can easily be disseminat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causing serious damage to the victim compared to ordinary insult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unishes defamation act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more severely than general defamation acts, and that insulting act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as so-called "bad words," hav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Act establishes a penalty regulation that aggravates the punishment of insulting act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so-called 'hate speech'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which goes beyond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riggers social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r individuals, even if it does not constitute an insult, by adding hate speech information to illegal information that should not be distribut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enabling victims of hate speech to use the rights relief procedure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ncluding temporary measures. However, in order to avoid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Act defines hate speech in a narrow sense by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treaties that have legal effect in Korea and discussions on the criteria for judging hate speech in academic circles.

3. Strengthening Temporary Measures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se rights have been infringed by information disclos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may request th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to delete the information or revise the rebuttal contents, but the request to publish the rebuttal contents has been effectively codified. In addition, even if the person whose rights have been infringed requests deleti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will take temporary measures if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s have been infringed or if a dispute is expected. In practice,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situation wher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can say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deletion of the information, so the measures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can take are effectively unified as temporary measures. Reflecting this practice, the contents of the measures that an infringed person may request from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Article 44(2) of the Act and the measures taken b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ccordingly are unified as 'interim measures'.

Currentl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limits the period for whic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can take temporary measures to 30 days, but does not stipulate how to handle infringing information after the 30-day period has elapsed. In addition, if a person who claims that his or her rights have been infringed request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o delete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must delete or take temporary measures, and there is no procedure for the information publisher to appeal.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a procedure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information publisher to appeal if there is a temporary measure to block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if there is an appeal by the information publisher, it will be referred to the ex officio mediation procedure of the Onlin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addition, if there is no objection from the information publisher to the provisional measures, the information will be deleted after the provisional measures expire, thereby clarifying the follow-up procedure of the provisional measures.

In addition, i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has taken provisional measures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deletion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emp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from liability for compensation due to the distribution of such information, thereby reducing the burden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distribution of hate speech information has been newly added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so that those who have been harmed by hate speech information can also use rights remedy procedures such as provisional measures.

4. Strengthen the role of the Onlin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Defamation Dispute Resolution Unit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as a dispute resolution body for digital violence, has limited enforcement powers and is unable to resolve various types of disputes between perpetrators, victim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over digital violence, as well as failing to provide adequate solutions to the inherent problems of interim measures, which are often used in response to digital violence.

In addition, while most dispute resolution bodi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ctor are run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ven those that have been praised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civilian members are mostly affiliated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Defamation Dispute Resolution Unit is uniquely located within a private organizatio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view Commission.

Therefore, it is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o secure higher enforcement and enforcement power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temporary measures, and it is desirable to have the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under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ase of increased enforcement and enforcement power.

Therefore,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ithi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spond to digital violence,

including not only defamation but also invasion of privacy and insults, and its role should be strengthened by introducing rapi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creasing the power to close cases, and establishing an ex officio mediation system for interim measures, so that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for digital violenc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5. Expanding Digital Ethics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proper digital ethics awareness at the student stage, it was stipulated that digital ethics education is mandatory in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at education for adults can also be conducted by targeting workplaces.

In particular, in the private sector, a penalty of not more than 5 million won ($4,000) is imposed for non-fulfillment of the education, so that the mandatory education in the workplace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In addition, the Act requires the NCC to establish measures to ensure that education for the entire population is provided, and establishes a basis for the NCC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digital ethics education or to designate specialized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education.

6.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online harm redress

The Online Harm 365 Center has been performing comprehensive counseling tasks for all types of damages that occur online.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comprehensive law regulating "online harm," and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Online Harm 365 Center acting as a system that ful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harm.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a unified remediation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spac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grounds of the Online Harm Remediation Center have been

prepared.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short-term improv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igital violence and establishing policies by synthesizing the contents of partial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policy measures to prevent youth damage and reduce social harm caused by digital violence.

In addition, it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plan to regulate digital violence through a comprehensive approach such as designating a domestic representative.

6. Expectations

Contribute to digital violence prevention and harm reduction and improve online culture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to Combat Digital Abuse

Chapter 3. How to Strengthen Legislation to Prevent Digital Abuse

Chapter 4. Conclusion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표명 및 정보교류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급속한 확산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주요 검색 포털 엔진인 '네이버'의 댓글 서비스 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에는 네이버 댓글 서비스를 통해 약 872만 건의 댓글이 게시되었으나, 그 수치는 2021년 6월에 이르러 약 1,200만 건까지 증가하였다. 댓글의 작성자 수 역시 2018년 12월 기준 약 350만 명에서 2021년 6월에는 약 44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의견 표현과 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

<표 1-1> 네이버 댓글 서비스 이용 변화 추이

구분	2018년 12월	2021년 6월
총 댓글수	8,719,443 개	11,197,639 개
작성자 수	3,530,087 명	4,412,380 명
일평균 댓글수	281,272 개	338,937 개

자료: 네이버

1) 네이버 데이터랩, 뉴스 댓글통계, 출처: https://datalab.naver.com/commentStat/news.naver

[그림 1-1] SNS 이용률 추이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의견 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 토론을 활성화하는 등의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사회적 변화는 소통의 방식을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여, 타인 권리 침해 정보의 게시,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등 문제 행위를 일소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SNS 서비스는 각종 명예훼손은 물론 인터넷·SNS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의 디지털 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에 따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 KISDI, 「2021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주요 내용」, 출처: https://stat.kisdi.re.kr/kor/board/BoardList.html

[그림 1-2] 디지털 폭력 형태별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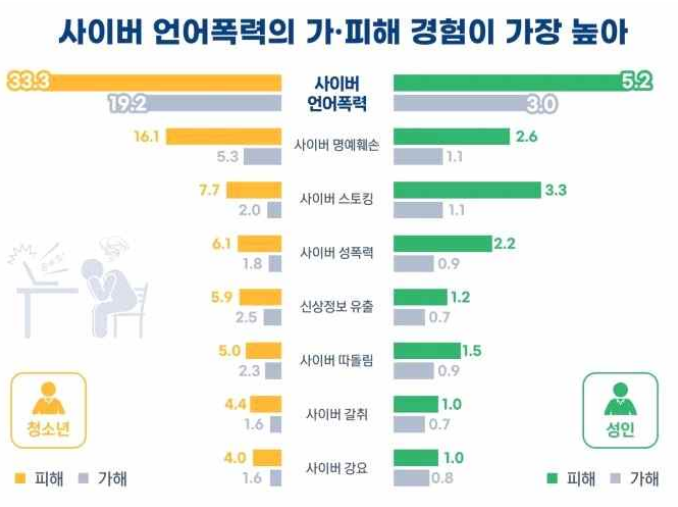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 권리침해로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고소 및 고발 건수는 2009년 4,752건에서 2019년에는 16,63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SNS 이용률의 급격한 상승(2011년: 16.8% → 2021년: 55.1%)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및 온라인 교류 문화의 확산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입법을 통한 강제성 있는 해결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

3) 방송통신위원회 · NIA,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출처: https://www.kcc.go.kr/user.do;jsessionid=T6z8zJq0-imRJb-bD3iXw_z099Yg6A3ZEbMi6ZZ9.servlet-aihgcldhome20?mode=view&page=A02060400&dc=K02060400&boardId=1030&cp=1&searchKey=TITLE&searchVal=%EC%82%AC%EC%9D%B4%EB%B2%84&boardSeq=54771

[그림 1-3]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 고소·고발 건수(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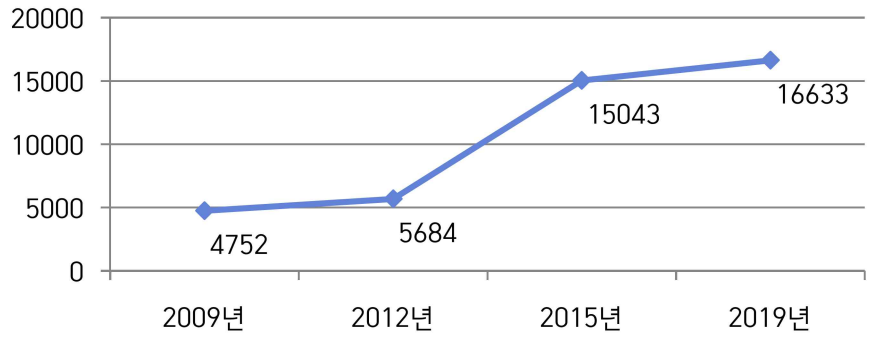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그림 1-4]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 고소·고발 건수(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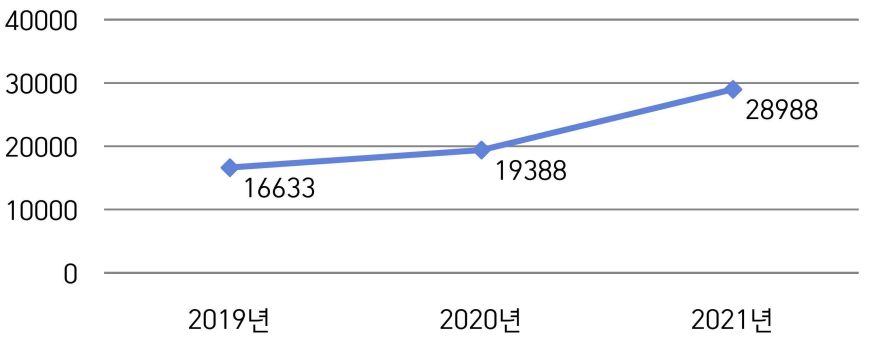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유형적으로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은 디지털 폭력의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디지털 폭력에 의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원인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취한 연예인의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의 연예 기사 댓글 금지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

음에도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4)]

[그림 1-5] 연예인 사망을 보도하는 각종 기사

'우울증 극단선택' 설리...도 넘은 악플들

10-15 19:20

[앵커]

가수 겸 배우 설리, 최진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부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게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2019년 11월 25일

사회

'자살 위험'에 놓인 연예인…"체계적인 대처 필요"

박재현 기자 입력 2019.11.26 15:12 수정 2019.11.26 15:38

출처: 연합뉴스, BBC News 코리아, 데일리굿뉴스

4) 청년일보, "하늘의 별이 된 문빈…연예인은 왜 슬플까?", 2023. 5. 13. (2023. 12. 10. 방문)

[그림 1-6] 연예인들 사망에 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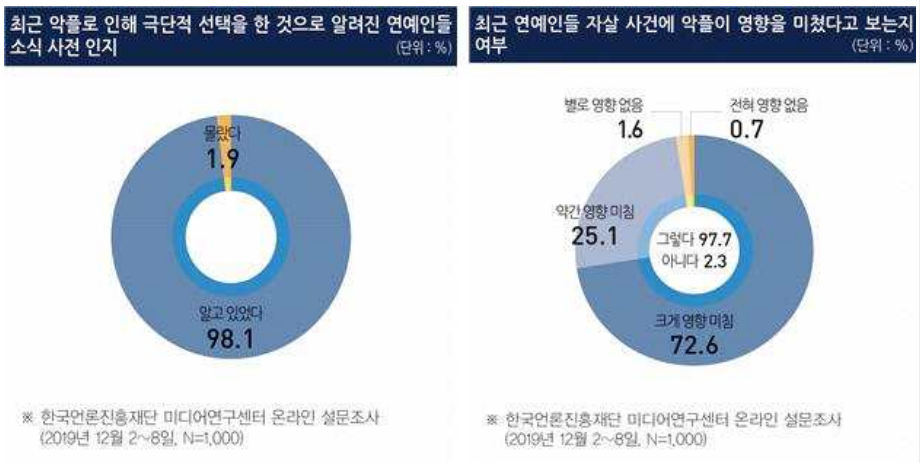

나아가, 최근에는 악성 댓글 수준을 넘어, 유튜브 등의 동영상 서비스를 활용하여 타인의 약점, 단점, 논란거리 등을 다루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라는 현상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성 또는 모욕성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재창출되며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림 1-7] 사이버 렉카 피해사례 및 각종 관련 유튜브 콘텐츠

출처: 조선일보, 유튜브

이와 같은 배경에서, 디지털 폭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폭력이 시급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 실적

구분	조정 전 합의	조정 거부 등	기각	각하	취하	사무처 답변 등	계
2019년	2	12	1	12	5	624	656
2020년	5	51	1	23	9	597	686
2021년	3	57	1	46	36	643	786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디지털 폭력의 피해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제방안이 포함된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안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디지털 폭력' 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는 등 그 규제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폭력의 규율은 표현의 자유와 밀접히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에 디지털 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폭력적 표현을 적절히 포섭할 정도의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 규정 아래에서, 디지털 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은 디지털 세계의 각 주체에 대하여, 디지털 폭력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디지털 폭력성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디지털 폭력의 위해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율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은 일단 전파가 시작되면 그 속도를 늦추거나,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구체적 방안은 직접적인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디지털피해구제센터 및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사후적 대책 외에도, 디지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책은 현행 법제의 체계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의 마련을 통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디지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폭력은 제도적 규율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행정명령이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이하 설명할 바와 같이 현행 법제의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방향을 총 4단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디지털 폭력의 정의 확립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한 디지털 폭력 방지책 강화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이 연구는 디지털 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디지털 폭력 방지책을 강화하며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법제 및 해외 법제를 참고하여 디지털 폭력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을 분석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죄에 대한 해외 법・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법・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또한, 현행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례 등을 참고하여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예상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논리를 제시한다.

나. 디지털 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대상 확대 및 관련 기관 설치 등 디지털 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이 연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실무적 문제점을 살펴보며 디지털 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 내에서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해외 유사 입법례와 제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내의 법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며,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대상 확대의 범위를 확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며, 피해구제 기구와 분쟁조정기구의 신설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범위를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과 정도를 분석한다.

다. 디지털 폭력 관련 인식 제고·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이 연구는 디지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학교·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인권 교육 등의 다양한 인식 제고용 교육을 참고하여 적절한 교육 내용을 모색하고, 교육 대상을 확정하고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효과를 예측한다.

라. 디지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개선 등이 구비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이 연구는 상기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폭력에 대한 강화된 규제 내용과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효과와 체계에 대하여 논한다.

제2장 디지털 폭력 방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제1절 개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 행위, 그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은 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체계를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폭력 방지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제2절 국내 디지털 폭력 방지 법제 현황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44조 제1항), 또는 음란물, 허위정보, 협박성 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며(제44조의7),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정보의 삭제요청(제44조의2),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자율규제(제44조의4),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44조의5),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제44조의6)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정보의 삭제요청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권리침해 사실의 신고자 및 정보 게재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 시 사후적으로 배상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제44조의2).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임시조치는 제44조의2에서의 임시조치와 동일한 것으로서 30일간 해당 게시물 등을 비공개 또는 차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만약 권리침해 사실이 완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 해당 게시물은 다시 공개되거나 차단이 해제될 수 있다(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는 청소년 유해정보, 제44조의7에서 정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시행할 수 있고(제44조의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44조의5).

정보통신망법은 사후적 구제로서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4조의6).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일정한 유형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상과 같은 예방 및 구제 수단은 점차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과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종·다양화되는 근래의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기에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설립 근거를 마련한 뒤 2007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권리침해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후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부에 조정을 회부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의 내용은 민·형사 제소 금지, 게시물 삭제, 구두·이메일·공개 게시물 등을 통한 사과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림 2-1]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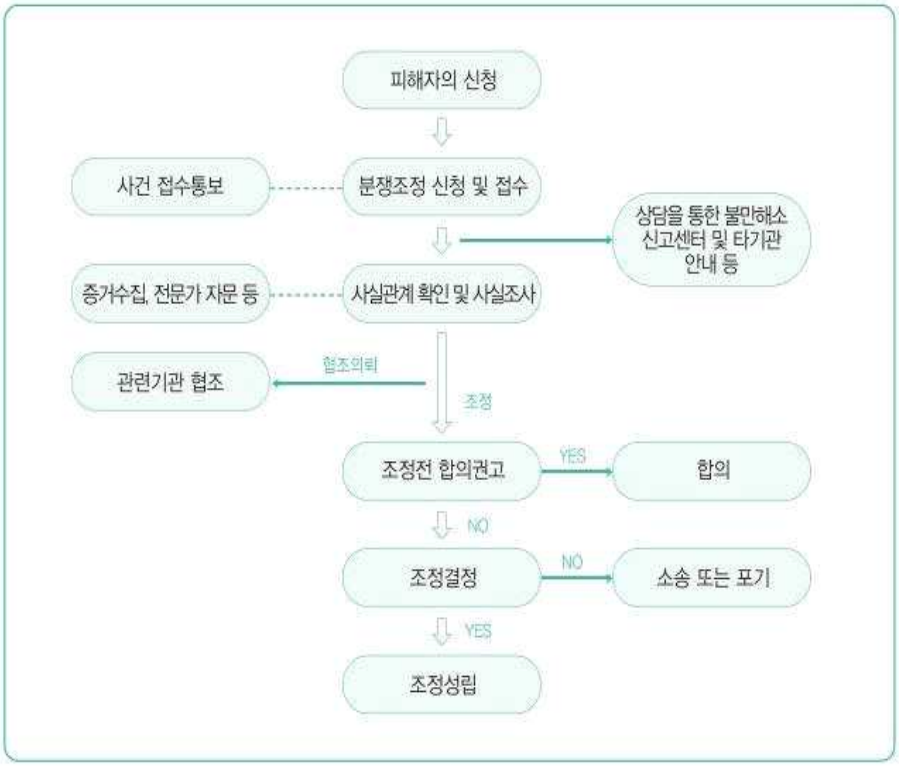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구제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같은 경제적 피해부터 디지털 폭력, 성폭력 등의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일원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 구제에 관련된 법령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2] 온라인피해 365센터 상담절차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절차 안내

1.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 온라인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피해상담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2. 피해상담 접수 및 피해유형 파악

-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피해발생 일시, 장소(URL, 사이트명), 피해내용 등을 확인하고 피해유형을 파악하여 분류(일반/심층)하는 단계입니다.

3. 소관기관 및 대응방안 확인

- 상담원이 피해 내용과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관기관, 기관별 피해지원 방법 등 대응방안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4. 대응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지원

- 소관기관이 명확한 경우 해당기관과 피해지원 절차 등을 안내하고,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복합적인 경우 심층상담 진행 및 대응방안 제공 등 이용자 피해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5.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신청인의 피해구제 진행 여부 모니터링, 추가적인 요청 사항 확인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사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자료: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두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담당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창구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상과 같은 법제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정보유통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규율을 가능하게 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율은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혐오 발언 등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표현으로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 폭력의 한 형태인 악성 댓글은 모욕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될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가 별도로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제3절 해외 디지털 폭력 방지 법제 현황

1. 개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한 국외의 입법 동향은 영미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5] 개괄적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형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취급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대륙법 국가는 일반형법 등을 통한 규율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해외 국가별 디지털 방지 폭력 법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2. 영미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디지털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예를 들어 아칸소 주법(AR Code)은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타인을 놀래키기·강압하기·위협하기·두렵게 하기·학대하기·괴롭히기의 목적으로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적의 있는 행위를 조성하는 행동'을 디지털 폭력으로 정의하고 가해자에게 90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6]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디지털 폭력 전담 기구인 eSafety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이버 공간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을 받고도 디지털 폭력 게시물 등을 삭제하지 않으면 eSafety가 대신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도록 정하였다.[7]

---

5) 김신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2018, pp. 609-610

6) 최진웅,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7. 5., p. 3

7) 위와 같음, p. 3

3. 독일 · 일본

독일은 형법전 제14장에 모욕에 관한 죄의 규정을 두고 정보통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하여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일반 형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은 2018년부터 시행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에 따라 독일 내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SNS 회사는 혐오 표현, 테러 선동 등 21개의 게시물 유형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업로드한 계정을 차단하도록 정하였다.[8)]

한편,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명예훼손·모욕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2022년 모욕죄에 대해 징역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가중하여 조절한 바 있다.[9)]

4. 기타 국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명예훼손법과 모욕법이 적용된다. 특히, 전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폭력 행위 중 상당수는 모욕법의 규율을 받는다.

유럽의 경우 앞서 살펴본 독일 외에도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이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중 터키는 모욕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2015년을 기준으로, 터키에서 1년동안 6만 3천여명이 일반적인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며,

---

8)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고려법학 제98호, 2020, p. 111-114

9) 국회사무처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일본 입법정보, 2022. 6. 30.

10) 손태규,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범의 현황 비교 연구”,

스위스에서 2,680명, 벨기에에서 448명, 스웨덴에서 19명, 크로아티아에서 19명이 각각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되었다.[11]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쿠바,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등이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다[12].

인권단체 등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언론 탄압의 우려 등을 이유로 모욕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모욕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국가도 발견되기는 하나, 이와 반대로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세계 각국의 모욕죄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13]

<표 2> 세계 각국의 모욕법 제·개정 동향

모욕죄 완전 폐지 국가	잉글랜드, 웨일즈(2009), 아일랜드(2009), 몰도바(2009), 아르메니아(2010), 몬테네그로(2011), 키르기스탄(2011/2015), 타지키스탄(2012), 마케도니아(2012), 루마니아(2014)
처벌 완화 국가	프랑스(2000, 2004, 2013), 벨기에(2005), 리투아니아(2014), 노르웨이(2015), 이탈리아(2016), 네덜란드(2018), 멕시코(2007), 우루과이(2009), 인도네시아(2006)
처벌 강화 국가	캄보디아(2018), 중국/홍콩(2017/2018), 일본(2022)

이처럼, 전 세계 상당 수 국가들이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그 수위도 미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국가의 법제를 살펴보면 일반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8, pp. 265-267 참조.

11) 손태규, 위의 책, p. 267.

12) 손태규, 위의 책, 같은 면.

13) 손태규, 위의 책, pp. 265-273 참조.

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보다는 국가원수 또는 국가에 대한 모욕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모욕죄를 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여전히 다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 디지털 폭력 방지 관련 법제 강화 방안

제1절 개정 방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 7. 4.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舊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로서 1986. 5. 12. 제정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으나, 디지털 폭력과 관련된 부분 등은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의 소관 분야로 잔존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NS의 등장 이래로 디지털 폭력의 방식은 더욱 다양화되고, 최근 청소년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 비율이 증가하며 디지털 폭력의 사회적 해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디지털 폭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2절 주요 경과

본 디지털 폭력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작업은 2023. 5월부터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반 발족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위 연구반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변호사, 그리고 그 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거쳐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2023. 10월부터 각종 이해관계자와의 추가 수정을 거친 뒤 아래의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제3절 개정 내용

1. 국내대리인 지정

가. 개정 이유

1)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해외 온라인 사업자가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자 2019년 국민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관련한 물품 및 서류를 제출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디지털폭력 방지를 위한 국내대리인 역할 확대의 필요성

현재 국민들이 포털, SNS, 동영상 감상 등 다양한 인터넷 활용시에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포털 서비스의 경우 구글의 점유율이 2023년을 기준으로 30%가량에 해당한다.[14]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SNS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의 이용이 국내 서비스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의 이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포탈의 경우보다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이용되는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

14) 인터넷트렌드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평균 점유율 32.4%로 집계됨

[그림 3-1] 주 이용 SNS 서비스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3-2] 주 이용 동영상 서비스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인터넷이용실태 조사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사업자들의 서비스의 이용빈도가 매우 높은바, 타인을 비방하거나 거짓된 정보가 확산되는 등의 디지털폭력이 해외사업자들의 서비스상에서 행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디지털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수행하고, 중재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락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상 의무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디지털폭력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도입 이후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국내대리인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역할을 하며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5]. 따라서, 먼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일하게, 국내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의 물품 및 서류의 제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은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국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국내대리인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전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아니라 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국내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16] 이처럼 법령은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할 뿐, 국내대리인에게 해당 업무의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바, 법령상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

15) 방송통신위원회, 2022. 10. 18. 자 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발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p 3.

범위를 실질적인 이용자 고충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하였다.

나. 개정 내용

1) 국내대리인 선임시의 대상 지정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국내에 자회사(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가 있거나 임원구성 및 사업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 하나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도록 하였다.

2)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확대

국내대리인에게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게,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들(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임시조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책임자의 업무, 분쟁조정을 위한 문서의 수령)을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조치와 관련한 업무(정보통신망법상의 명령 및 처분과 관련한 문서의 수령) 역시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내대리인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사업자 또는 이용자와의 유효한 연락수단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3) 기타

당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포함하는 개념(2016. 3월 개정)이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20. 8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정의가 불필요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제공자---------- ----------.
1.·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신 설>	5.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신 설>	6.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책임자의 업무
<신 설>	7. 제44조의10 내지 제44조의15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문서의 수령 또는 자료 제출 업무
<신 설>	8.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한 문서의 수령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	② ----------

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 어느 하나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신 설>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전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래 국내대리인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국민의 고충 해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용자보호와 실질

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대한 대리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고자 하였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국내 자회사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될 것인데, 이때 국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면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법령상 허용된 업무의 범위는 넓게 설정하되, 구체적인 대리업무의 범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입법 효과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대리인에게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이전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대리인의 역할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 취지에 걸맞는 이용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혐오표현 규제

가. 개정 이유

1)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디지털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불안감, 불쾌감 등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17].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

17)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 37.

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형법 제311조).

이 중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그 전파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게시된 글 또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 용이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보다 가중된 처벌을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상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경우 다수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에게 보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명예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만을 가중처벌할 뿐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행위는 형법상 일반 모욕죄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소위 ‘악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행위의 상당 수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욕’ 행

위에 해당한다는 점,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행위의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법체계의 균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가중처벌한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행위도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혐오표현 규제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행위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언어폭력 행위는 별도로 제재하고 있지 않은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언어 표현의 경우에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발동시키게 하는 소위 '혐오표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혐오표현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 정보를 추가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 내용

1)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70조의3 제1항). 다만,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었는 친고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도 친고죄에 해당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70조의3 제2항).

또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는 불법정보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를 추가로 규정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7).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0조의3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2) 혐오표현 규제의 신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기타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함으로써 또는 해당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정보' 를 혐오표현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44조 제2항). 또한, 제70조의3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에 따라, 제44조 제1항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의 예시로 모욕을 추가하였다(개정안 제44조 제1항).

혐오표현정보로 인한 피해자는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대체하여 신설되는 위원회로, 이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은 후술함)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안 제44조의

6). 혐오표현 정보로 인한 피해자는 임시조치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3. 임시조치 강화' 부분에서 후술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기타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함으로써 또는 해당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정보(이하 "혐오표현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혐오표현정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조장·강화되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 또는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

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나, 현행 형법은 모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반복하여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내린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일본은 2022년 형법 개정으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미국과 독일 등 국가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로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 특히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으므로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혐오표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논의되었으며, 규제의 대상인 혐오표현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사전적 의미에서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 단순한 불쾌감,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표현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바, 단순한 불쾌감이나 선입관의 형성을 넘어, 특정 집단 혹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혐오로서 그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발동시키게 하는 표현으로 국한하여 규제하기로 하였다.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학계의 기존 논의[18]를 참고하였으며, 특히 국회의 비준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복수의 국제 조약[19]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18) 사법정책연구원,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국가인권위원회 2019. 11. 25.자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 대응 의견표명' 결정 등 참조.

19)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다자조약 제1007호, 1990. 6. 13.)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국제협약(다자조약 제667호, 1979. 1. 6.)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에 비추어 이와 같이 좁은 의미로 정의된 혐오표현은 기존의 법체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혐오표현 규제를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입법 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를 가중처벌하고, 혐오표현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행위가 상당히 억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폭력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임시조치 강화

가. 개정 이유

1) 삭제 등 조치의 사문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1) 그 정보의 삭제 또는 (2)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권리를 침해 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 중 '반박내용 게재'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당사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실무상 없으며, 결국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요청은 (1)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 법문상으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나, 만일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고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조치를, (2)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불명확하고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도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 게재, 임시조치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현행법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반박내용 게재 조치나 정보의 삭제 조치는 사문화 되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조치는 임시조치로 일원화 되어 있다[20].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사항은 '임시조치'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2) 임시조치 후속절차의 부재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게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20)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3.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의 기간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임시조치 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권리침해 정보를 다시 복원하여야 하는지 혹은 계속하여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실무상으로는 30일 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에 법률적 근거가 없고 특히 정보게재자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30일을 초과하는 접근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등 임시조치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 내용

1) 임시조치 일원화

정보통신망에 제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그 정보의 삭제’로 일원화하고, ‘반박내용 게재’를 삭제하였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 및 혐오표현 정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은 자의 예시로 모욕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였으며, 권리를 침해 받은 자 외에 혐오 표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도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2 제1항).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가 명백한지 또는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 실무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 요소를 배제하였으며.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2 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 또는 혐오표현정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조장·강화되는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또는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를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 정보게재자의 불복절차 신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에 관한 분쟁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회부되도록 하였다(제44조의2 제7항, 제8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신 설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⑦ 정보게재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신 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2.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3.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6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임시조치 후속절차 명확화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2 제4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2 제9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있는 때에는 제44조의16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신 설 >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정보 또는 혐오표현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2 제6항). 또한, 이러한 개정에 따라 필요한 인용 조문 등의 정비, 임의의 임시조치와 권리침해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간 체계 통일을 위한 조문 정비를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2 제5항, 제44조의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혐오표현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온

	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제5항, 제7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복원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를 거쳐 삭제 또는 복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상,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정보는 정보게재자가 삭제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만약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30일 경과 후 게시물을 복원할 경우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반복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에서는 임시조치 기간 경과 시점까지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논의가 되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시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각 권리자의 주장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 또는 재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책임을 면제 받는다는 점, 특정 정보가 권리침해정보 또는 혐오표현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적 면제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라. 입법 효과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침해 또는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의 처리 방안 등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을 도입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시조치 제도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가. 개정 이유

1) 현행 규정의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44조의10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업무를 맡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의3에서도 같은 정보를 임시조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기재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2007. 1. 26. 신설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이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그 범위가 급격히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정된 것이다[21].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6. 11., p 104.

2)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수단의 필요성

위 규정 취지와 같이, 정보통신망 내 분쟁 해결을 위해 대체적 수단을 도입하고 관련 기구를 둘 필요성은 지금도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 오히려,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보급화로 인터넷 이용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인터넷 이용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디지털 폭력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터넷 언론 등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연예인·운동선수 등에게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관련 문제 발생 시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해결을 받는 방법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돌입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에 가서 여러 변론 등을 거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근거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집행력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 폭력을 둘러싼 가해자·피해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다양한 양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의 한계 때문인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8호)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의결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모두가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하고, 당사자 중 하나라도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명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히 당사자들 간 조정을 성립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조정의 불성립이 기본 설정값(default)으로 있다보니 해결률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또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폭력과 관련된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임시조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임시조치는 최대 30일의 기간까지 문제가 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임시조치는 위 기간이 경과하면 결국 문제가 되었던 정보가 다시 공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효과적인 대책이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분쟁의 조정기구로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폭력의 빈도·수위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효과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와 타 분쟁조정기구의 비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외 타 법률상 운영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분쟁조정기구와는 현격히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 분쟁조정기구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중앙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운영되며, 위원 위촉은 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이 맡고 있다.

<표 3-1> 정보·통신 분야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목적과 조정대상

정보 · 통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	국가도메인(.kr, .한국)과 일반도메인(.com, net 등)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개인정보에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조정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열람권 행사 등의 행사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과 관련된 분쟁조정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분쟁조정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출처: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피면,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촉을 받고, 그 운영지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특히, 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보고서를 살피면, "다수의 타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사무조직의 명칭사무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위명칭 및 사무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로써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별도의 위원회라는 점, ②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팀'이라는 사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22].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 11., pp 8-10.

그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 중 공무원 비중을 최소화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렸다고 평가받는 아래의 조정기관들 중[23]에서도 민간기구의 통제를 받는 곳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외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정도 뿐인데, 이 위원회도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고, 극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이며, 위원장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권자로 되어있다.

〈표 3-2〉 타 법률의 분쟁조정위원회

명칭	근거법률	소속	위원 임명·위촉권자
공정거래분쟁 조정협의회	공정거래법 제73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공정위 위원장
공제분쟁 조정위원회	여객자동차법 제70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대부업분쟁 조정위원회	대부업법 제18조	시·도지사	시·도지사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8조의2	과기정통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법 제19조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장

4) 소결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그 집행력·강제력이 부족하고, 디지털 폭력의 여러 주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사안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23)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pp 138-139.

이에 더 나아가, 집행력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분쟁조정 기구는 강제력이 높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런 경우에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분쟁조정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상기하였듯, 대부분의 정보·통신 분야의 분쟁조정기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강제력이 높은 결정을 하게 되도록 제도 개편이 일어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분쟁조정기구 또한 다른 정보·통신 분야 분쟁조정기구의 예를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검토보고 내용대로 사무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개정 내용

1)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내용을 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내 새로운 기구로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정위원회는 상기한 제44조의2 개정으로 인해 명예훼손·모욕·사생활 침해·혐오표현 정보 등 다양한 관련 분쟁해결 임무를 맡아야 하기에 위원의 수를 늘려 40명 이내로 하고, 법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을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다룰 조정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촉토록 하고, 그 임기는 타 유사 법률 내용을 참조하여 2년으로 하였다.

2) 조정부, 주심위원 및 전문위원

인터넷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보다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 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고, 그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는 조정위

원회가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도록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안별 주심위원을 배치하여 조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개정안 제44조의10 제4항), 조정위원회는 조정부 업무의 보조를 위해 각 조정부에 1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꾀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10제5항).

3)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바로 조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다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12 제5항). 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정과정보다는 빠르게 합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다면 분쟁해결에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있은 후 관련 분쟁에 대해 심사하고, 조정안을 60일 내에 작성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12 제6항). 그 특유의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인터넷상 분쟁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조정위원회가 최대한 빠르게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만 너무 신속한 해결만을 추구하다보면 심사의 정확성·공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균형점이 되는 기간을 정하고자 하였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당사자에게 통지를 보내도록 하였고,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 부분이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와 큰 차이로, 조정안 효력의 기본 설정값(default)을 '수락'으로 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분쟁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 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력을 강화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13 제2항).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여 관련 분쟁조정의 종결적인 효력을 확고히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13 제5항).

4)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상기하였듯 현재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임시조치로써,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또는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에 대해 개정안 제44조의2 제8항에서는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 제44조의12의 직권조정절차로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받아 직권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조치를 해제할 것인지 또는 삭제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침해된 권리의 신속한 구제 등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16 제1항, 제2항).

임시조치 신청자(또는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게재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직권조정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송제기를 통하여서만 다툴 수 있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이 임시조치를 둘러싼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문제가 된 게재 정보를 직권조정안이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정보게재자가 소 제기를 늦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어 정보가 다시 공개되어서는 안되므로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동안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4조의16 제5항).

60일의 기간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권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시조치에 대한 분쟁은 종결된다(개정안 제44조의16 제8항). 기간 내 소 제기가 있을 시에는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개정안 제44조의16 제6항).

이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기존의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빠르게 조정위원회로 해당 사안이 회부되고, 조정위원회는 내부의 조정부와 전문위원을 통해 사안을 심의하여 15일 내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더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소 제기만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분쟁의 종결이 훨씬 수월해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의10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0명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2 --.
<신 설>	1. 조정 대상: 이용자 간 분쟁,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조정 내용: 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또는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 나. 제44조의2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와 사안별로 주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주심위원 및 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1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2 (분쟁조정의 절차) ① 제44조의10제1항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13 (분쟁조정 후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거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제2항 후문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문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신 설 >	제44조의14 (분쟁조정의 거부 및 정지) ① 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 신 설 >	제44조의15 (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44조의12제5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4조의14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4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4조의13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16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

	정) ① 제44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침해된 권리의 신속한 구제 등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제44조의12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해당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위 직권조정결정서 주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락이 의제되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우선, 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터넷상 발생할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오랜 기간 논의되었다. 인원을 늘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모욕 등 분야에 맞추어 위원들을 배치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은 보다 적은 인원의 조정부를 두어 빠르게 사안을 살피도록 하였다. 특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같은 사안을 살펴본다면 분쟁해결의 신속성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는 조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었다. 추가로 조정부에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각종 업무를 보조하는 방법도 제시되었고, 이 또한 조정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적합하다 판단되었다.

또한,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락으로 보는 것이 너무 효율성만을 강조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상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투입하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안이 마련되면 기본 설정값을 수락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분쟁해결력을 높이는 등 타 입법례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어 조정위원회도 이처럼 규정하기로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가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 최대 30일간 게재되어있던 정보가 접근금지 되므로 이러한 기존의 제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여러차례 진행되었다. 조정위원회 내 조정부에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30일이라는 임시조치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으로는 임시조치 기간 후 당사자들의 명예 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만들었으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후 조정위원회에 자료가 송부되면 15일 이내에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이고 빠른 분쟁해결 방법을 도모하였다.

라. 입법 효과

상기하였듯이, 명예훼손 등 인터넷상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주로 문제되는 임시조치와 관련한 분쟁을 직권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여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해당 개정의 가장 큰 효과일 것이다.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참고한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9153호)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

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방송법 (법률 제19326호)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1. 방송사업자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4. 전광판방송사업자
5. 전송망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8. 외주제작사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⑥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⑦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조정의 개시) ① 제35조의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2.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3.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4.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5.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제91조의4(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6호)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전자회의 등)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 시각을 기준으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원격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된 때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회 시각 이전에 모든 의결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폐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된 시각을 기준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 회의록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적으로 확인·서명할 수 있다. ⑥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회의의 개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5) 직권분쟁조정 관련 참고 법률

1.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및 직권조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4.>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및 직권조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 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3. 저작권법상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부 및 직권조정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위원회와 직권조정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분쟁조정신청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환경분쟁 조정법상 분쟁조정위원회 및 직권조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상 건축분쟁위원회 및 직권조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5. 디지털 윤리 교육 확대

가. 개정 이유

디지털폭력으로 인한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조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분쟁조정 등의 절차와 더불어 사전적으로 디지털폭력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학교와 사업장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여 국민들의 디지털윤리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방식이 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이버폭력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4]

과거 학교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2021. 4. 20.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2019. 10. 29.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등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하여 의무화하고자 하는 디지털 윤리 교육은 단순히 학교폭력 방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

24)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4. 3. 시행), 경기도교육청(2021. 7. 14. 시행) 등

망법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개정 내용

1) 디지털 윤리 교육의 의무화

본 개정안에서는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과 사업장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먼저, 학생 시기에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의무교육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에서는 현재도 안전, 다문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이버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므로,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디지털 윤리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디지털폭력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는 성인들 역시 존재하므로, 사업장을 교육 대상으로 삼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존재한다. 디지털 윤리 교육도 이들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사내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미이행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사업장과 같은 민간 영역에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25] 본 개정안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의 의무교육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두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수립 및 지원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동법 제13조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의2)

학교와 사업장에 의무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 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4조의17(디지털 윤리 교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매년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

	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디지털 윤리 교육에 관한 시책, 디지털 윤리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실시 결과의 점검 기준, 공표, 필요한 조치, 교육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① ~ ③ (생 략)	제76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교육의 대상을 교육기관 등의 공공단체로 한정할지, 민간 영역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전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학교와 사업장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의무교육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수립, 전문기관 지정을 통하여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도 디지털 윤리 교육의 대상으로 포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미이행시의 제재조치로 교육실시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26]. 디지털윤리의 경우 현재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사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 본 개정안에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라. 입법 효과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윤리 교육을 접하고, 디지털폭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디지털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후조치들과 함께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작용하여 디지털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온라인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가. 개정 이유

현재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 중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이하 "온라인 피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온라인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단일 법률에 따라 포괄적·통일적으로 구제하기보다는, 기존에 (온라인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개별 법령의 전통적 피해구제 제도의 틀 안에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존 법령상 피해구제 제도들은 온라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로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 피해의 고유한 특

26)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제7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제7항 등

성을 반영한 피해구제 장치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일원화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센터의 설립·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개정 내용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참조하여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 법인의 설립 등기, 임직원의 구성, 민법의 준용, 운영 경비 및 시행령 위임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4조의18(온라인피해구제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또는 혐오표현정보로 인한 피해(이하 "온라인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라인피해구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피해의 상담 및 신고 접수

	2.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알선 등 대응방안 안내 3. 온라인피해의 구제 및 후속 조치 지원 4.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5. 온라인피해 관련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 보호를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6. 온라인피해 관련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7. 온라인피해 관련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 보호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9.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구제지원,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⑤ 센터는 관계기관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설립,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 효과

정보통신망법에 기존에 운영되던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원화된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피해구제센터는 온라인피해의 상담 및 신고 접수 단계부터 온라인피해의 구제 및 후속 조치 지원단계까지 전단계에 걸쳐 온라인피해 당사자의 피해구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4장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표명 및 정보교류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급속한 확산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별개로 현실 공간의 다양한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디지털 폭력의 등장 및 심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폭력은 사회적으로는 연예인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디지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여러 차례 존재했지만, 본 연구과제의 법 개정 논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디지털 폭력의 해악성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개정 논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다. 첫째로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자 중 국내에 자회사가 있거나 임원구성 및 사업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 하나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고, 국내대리인이 해외 사업자와의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들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임시조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책임자의 업무, 분쟁조정을 위한 문서의 수령으로 확대하였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상의 명령 및 처분과 관련한 문서의 수령을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강화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를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소위 '악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언

어폭력 행위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발동시키도록 하는 소위 '혐오표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정보를 추가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그 범위를 좁은 의미로 한정하였다.

셋째, 임시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반박내용 게재 등 사문화된 조문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실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사항을 '임시조치'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를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정보게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다.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해당 정보는 삭제되도록 하여 임시조치의 후속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아 임시조치를 한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혐오표현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함에 따라 혐오표현 정보로 피해를 받은 자도 임시조치 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쟁조정기구의 보다 높은 집행력·강제력을 확보하며, 임시조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모욕 등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도록 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절차를 도입하며,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직권조정제도를 갖추는 등 그 역할을 강화시켜 디지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다섯째, 예방적 방안으로서 디지털 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시기에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장을 교육 대상으로 삼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기존에 운영되던 온라인피해구제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결과물은 향후 관련 법 ·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입법에 반영될 경우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돌아보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네이버 데이터랩, 뉴스 댓글통계

KISDI, 「2021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 NIA,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청년일보, “하늘의 별이 된 문빈…연예인은 왜 슬플까?”, 2023. 5. 13. (2023. 12. 10. 접근)

김신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최진웅,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7. 5.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고려법학 제98호, 2020.

국회사무처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일본 입법정보, 2022. 6. 30.

손태규,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범의 현황 비교 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8.

방송통신위원회, 2022. 10. 18. 자 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발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국가인권위원회 2019. 11. 25.자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 대응 의견표명’ 결정 등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다자조약 제1007호, 1990. 6. 1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국제협약(다자조약 제667호, 1979. 1. 6.)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6. 11.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4. 3. 시행), 경기도교육청(2021. 7. 14. 시행) 등

[별첨]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종합본)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1.·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업무
<신 설>	5.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신 설>	6.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책임자의 업무
<신 설>	7. 제44조의10 내지 제44조의15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문서의 수령 또는 자료 제출 업무

<신 설>	8.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한 문서의 수령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 어느 하나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신 설>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침해, 명예훼손, 모욕 ----------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된다. ② 이용자는 성별, 장애, 질병, 종교, 나이, 직업, 출신지역, 국가, 민족,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기타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함으로써 또는 어떤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정보(이하 "혐오표현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명예훼손, 모욕 ---------- 자 또는 혐오표현정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조장·강화되는 피해를 받은 자는 --- 침해 또는 피해 사실--- 삭제----------. ------ 삭제를 ----------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44조의12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유통 또는 접근 차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정보게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다

	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정보게재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2.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3.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
<신 설>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2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여 ---------- 침해하거나 혐오표현정보에 해당한다고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제5항, 제7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침해, 명예훼손, 모욕 ---------- 주장하는 자 또는 혐오표현정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조장·강화되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 침해 또는 피해사실----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의10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0명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2 --.
<신 설>	1. 조정 대상: 이용자 간 분쟁,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조정 내용: 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또는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 나. 제44조의2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와 사안별로 주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⑥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주심위원 및 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1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2 (분쟁조정의 절차) ① 제44조의10제1항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13 (분쟁조정 후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거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제2항 후문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문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신 설 >	제44조의14 (분쟁조정의 거부 및 정지) ① 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 신 설 >	제44조의15 (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44조의12제5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4조의14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4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4조의13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16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① 제44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

	회가 침해된 권리의 신속한 구제 등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제44조의12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해당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위 직권조정결정서 주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락이 의제되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44조의17(디지털 윤리 교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매년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디지털 윤리 교육에 관한 시책, 디지털 윤리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실시 결과의 점검 기준, 공표, 필요한 조치, 교육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8(온라인피해구제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또는 혐오표현정보로 인한 피해(이하 “온라인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 증진

	을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라인피해구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피해의 상담 및 신고 접수 2.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알선 등 대응방안 안내 3. 온라인피해의 구제 및 후속 조치 지원 4.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5. 온라인피해 관련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 보호를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6. 온라인피해 관련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7. 온라인피해 관련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자의 권익증진 등 보호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9.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구제지원,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⑤ 센터는 관계기관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설립,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 신 설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10 내지 제44조의16에 따른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

	다.
< 신 설 >	제70조의3(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6조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76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⑧ ------ 제4항----------.

저 자 소 개

이 수 경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 과정
· 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이 정 훈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현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

유 현 상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

강 석 준

· 고려대 국제학부 졸업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

장 슬 기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

배 종 우

· 서울대 언어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3-14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2023년 12월 30일 인쇄
202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